

의안번호	제 280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9년 10월 8일

#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0
----------	-----

제출연월일: 2019. 10. 8.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이유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각종 근거를 마련하여 책무성을 강화 하고, 충북교육 구성원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충북교육 구성원 상호간에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소셜미디어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충북교육구성원의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소셜미디어기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소셜미디어의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교육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기자를 위촉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소셜미디어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사용을 위해 충북교육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2항)

- 소셜미디어 행사를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소셜미디어 교육 및 소셜미디어 기자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붙임과 같음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7. 12. ~ 2019. 8. 1.): 특기할 사항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과 같음

3) 규제심사: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검토 의견 반영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충북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2. “충북교육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충북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도민들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식별 정보를 말한다.

5. “소셜미디어기자”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충청북도교육청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으로 학부모 기자단, 충북교육 콘텐츠 지원단, 홍보대사 등을 말한다.

6. “소셜미디어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전하고 발전적인 소셜미디어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7. “경품”이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 운영계획) 교육감은 이용자와 교육전반에 대하여 상호소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셜미디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소셜미디어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소셜미디어 활성화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행사의 운영에 경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방법·범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교육감은 구성원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성원의 교육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구성원 의견, 상담 등 구성원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셜미디어기자 운영) ①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현장의 교육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소셜미디어기자가 각종 교육정책·소식·정보 등을 상시 제작하여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소셜미디어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2회 이상 올리는 경우
3. 소셜미디어기자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셜미디어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소셜미디어기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교육) ①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하고 올바른 작동, 표현 및 활용 등을 위해 소셜미디어기자와 구성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7조(행사의 운영) ① 교육감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참여·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 또는 홍보하려는 경우
2. 교육청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
3.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정책을 홍보하거나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른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시작 전에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게시물의 관리) ①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9조(경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소셜미디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우수 원고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소셜미디어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충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① 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② 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2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부모 기자단, 충북 교육 콘텐츠 지원단,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소셜미디어 기자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 행사 경품 제공 기준 (제7조 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선 정 방 법	경품 제공 한도액 (행사 1회당)	개최 횟수
글·사진·동영상 게시	당첨자/ 참여자	심사/ 추첨	500만원 이하	연 12회 이하
퀴즈 및 게임	정답자	추첨	500만원 이하	
설문 및 토론	참여자	심사/ 추첨	500만원 이하	
공모전 등	당첨자/ 참여자	심사/ 추첨	1,000만원 이하	연 2회 이하

비고

1. 「행사 1회당 경품 제공 한도액」은 1회의 행사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경품의 합계 금액에 대한 한도를 말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소셜미디어”란 <u>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u></p> <p>2. ~ 4.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2조(정의) ----- -----.</p> <p>1. ----- <u>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u></p> <p>2. ~ 4. (현행과 같음)</p> <p>5. “소셜미디어기자”란 <u>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충청북도교육청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으로 학부모 기자단, 충북교육 콘텐츠 지원단, 홍보대사 등을 말한다.</u></p> <p>6. “소셜미디어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u>건전하고 발전적인 소셜미디어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u></p> <p>7. “경품”이란 <u>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말한다.</u></p> <p>제3조(소셜미디어 운영계획) <u>교육감은 이용자와 교육전반에 대하여 상호소통하</u></p>

현행	개정안
<p>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충청북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구성원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성원의 교육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1. ~ 3. (생략)</p> <p>&lt;신설&gt;</p>	<p><u>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셜미디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소셜미디어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u></li> <li><u>2. 소셜미디어 활성화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u></li> <li><u>3. 제7조에 따른 행사의 운영에 경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방법·범위 등에 관한 사항</u></li> <li><u>4.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li> </ol> <p>제4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u>교육감</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5조(소셜미디어기자 운영) ① <u>교육감</u> <u>은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현장의 교육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6조(행사의 운영)① (생략) 1. ~ 2. (생략)</p>	<p>② <u>교육감은 소셜미디어기자가 각종 교육정책·소식·정보 등을 상시 제작하여 제공하게 할 수 있다.</u></p> <p>③ <u>교육감은 소셜미디어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u></li> <li>2. <u>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2회 이상 올리는 경우</u></li> <li>3. <u>소셜미디어기자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u></li> <li>4. <u>그 밖에 소셜미디어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u></li> </ol> <p>④ <u>그 밖에 소셜미디어기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u></p> <p>제6조(소셜미디어 교육) ① <u>교육감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하고 올바른 작동, 표현 및 활용 등을 위해 소셜미디어기와 구성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u></p> <p>② <u>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u></p> <p>제7조(행사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3. <u>교육청의 소셜미디어 활성화</u> 를 위한 경우	3. <u>소셜미디어의</u> ----- --
4. 그 밖에 <u>교육청</u> 을 홍보하거나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4. ----- <u>교육정책</u> -----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u>참여자</u> 에게 <u>예산의 범위</u> 에서 <u>기념품이나 상품권</u>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 ----- <u>별표의 기준에 따른</u> -----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u>기념품이나 상품권</u> 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u>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u> 은 행사 시작 전에 <u>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u> 를 통하여 <u>이용자</u> 에게 알려야 한다.	③ ----- <u>경품</u> ----- ----- --- <u>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u> --- ----- -----.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u>게시물</u> 을 <u>유지·관리</u> 하여야 <u>한다</u> .	제8조(게시물의 관리) ① ----- ----- ----- ----- <u>하며,</u> <u>이용자의 의견을 존중</u> 하여야 <u>한다</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7. (생략)	1. ~ 7. (생략)
8. 동일 <u>소셜계정</u> 또는 동일 <u>소셜계정</u> 이라고 인정되는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8. ---- <u>하거나 유사한 내용</u> 을 반복적으로 -----
9. 그 밖에 <u>욕설, 장난, 음란물, 연습성 오류</u>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9. <u>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u>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p><u>&lt;신설&gt;</u></p> <p>제7조(포상) 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충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u>구성원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u></p> <p>제8조(개인정보보호) <u>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u></li> <li>2. <u>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u></li> <li>3. <u>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u></li> </ol>	<p>제9조(경비의 지원) ① <u>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소셜미디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교육감은 우수 원고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소셜미디어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10조(포상) ----- ----- <u>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u>----- -----<u>에 따라</u>----- ----- .</p> <p>제11조(개인정보보호) ① <u>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u></p> <p>② <u>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u></li> <li>2. <u>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u></li> </ol>

현행	개정안
<p data-bbox="92 271 778 383">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p> <p data-bbox="92 707 778 1021">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u>교육감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p> <p data-bbox="395 1440 472 1480">부칙</p> <p data-bbox="92 1507 695 1547"><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 data-bbox="92 1659 268 1700">&lt;신설&gt;</p>	<p data-bbox="805 271 1492 517">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p> <p data-bbox="805 539 1492 651">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p> <p data-bbox="805 707 1492 954">제12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u>교육감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p data-bbox="805 976 1492 1155">② <u>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 data-bbox="805 1178 1492 1357">③ <u>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u></p> <p data-bbox="1109 1440 1185 1480">부칙</p> <p data-bbox="805 1507 1476 1547">제1조(시행일) -----.</p> <p data-bbox="805 1659 1492 1973">제2조(경과조치) <u>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부모 기자단, 충북교육 콘텐츠 지원단,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소셜미디어기자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u></p>

현행	개정안																							
<p data-bbox="92 678 268 719"><u>&lt;신설&gt;</u></p>	<p data-bbox="804 344 871 371">[별표]</p> <p data-bbox="900 383 1401 416"><u>행사 경품 제공 기준 (제7조 제2항 관련)</u></p> <table border="1" data-bbox="810 439 1490 846"> <thead> <tr> <th data-bbox="810 439 954 539">구분</th> <th data-bbox="954 439 1066 539">대상</th> <th data-bbox="1066 439 1177 539">선정방법</th> <th data-bbox="1177 439 1350 539">경품 제공 한도액 (행사 1회당)</th> <th data-bbox="1350 439 1490 539">개최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10 539 954 618">글·사진 · 동영상 게시</td> <td data-bbox="954 539 1066 618">당첨자/ 참여자</td> <td data-bbox="1066 539 1177 618">심사/ 추첨</td> <td data-bbox="1177 539 1350 618">500만원 이하</td> <td data-bbox="1350 539 1490 770" rowspan="3">연 12회 이하</td> </tr> <tr> <td data-bbox="810 618 954 692">퀴즈 및 게임</td> <td data-bbox="954 618 1066 692">정답자</td> <td data-bbox="1066 618 1177 692">추첨</td> <td data-bbox="1177 618 1350 692">500만원 이하</td> </tr> <tr> <td data-bbox="810 692 954 770">설문 및 토론</td> <td data-bbox="954 692 1066 770">참여자</td> <td data-bbox="1066 692 1177 770">심사/ 추첨</td> <td data-bbox="1177 692 1350 770">500만원 이하</td> </tr> <tr> <td data-bbox="810 770 954 846">공모전 등</td> <td data-bbox="954 770 1066 846">당첨자/ 참여자</td> <td data-bbox="1066 770 1177 846">심사/ 추첨</td> <td data-bbox="1177 770 1350 846">1,000만원 이하</td> <td data-bbox="1350 770 1490 846">연 2회 이하</td> </tr> </tbody> </table> <p data-bbox="804 857 847 882">비고</p> <p data-bbox="826 889 1497 952">1. 「행사 1회당 경품 제공 한도액」은 1회의 행사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경품의 합계 금액에 대한 한도를 말한다.</p>	구분	대상	선정방법	경품 제공 한도액 (행사 1회당)	개최 횟수	글·사진 · 동영상 게시	당첨자/ 참여자	심사/ 추첨	500만원 이하	연 12회 이하	퀴즈 및 게임	정답자	추첨	500만원 이하	설문 및 토론	참여자	심사/ 추첨	500만원 이하	공모전 등	당첨자/ 참여자	심사/ 추첨	1,000만원 이하	연 2회 이하
구분	대상	선정방법	경품 제공 한도액 (행사 1회당)	개최 횟수																				
글·사진 · 동영상 게시	당첨자/ 참여자	심사/ 추첨	500만원 이하	연 12회 이하																				
퀴즈 및 게임	정답자	추첨	500만원 이하																					
설문 및 토론	참여자	심사/ 추첨	500만원 이하																					
공모전 등	당첨자/ 참여자	심사/ 추첨	1,000만원 이하	연 2회 이하																				

## 관계법령

### □ 국가정보화 기본법[시행 2019. 2. 22.][법률 제15369호, 2018. 2. 21.]

-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정부는 인터넷, 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시행 2017. 7. 26.][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18. 4. 23.][인천광역시조례 제5959호, 2018. 4. 23., 일부개정]

**제13조(이벤트 실시와 마일리지 제도 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통한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4-2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시스템에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04-23>

1. 시의 주요 시책사업 등을 홍보하는 경우

2. 시의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 및 기념하는 경우
  3. 인터넷 환경에서 인터넷 동호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경우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운영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따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관리 등 소요경비

**3. 관련조문**

- 안 제4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 안 제5조 소셜미디어기자 운영
- 안 제6조 소셜미디어 교육
- 안 제7조 행사의 운영
- 안 제9조 경비의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 요인

- SNS 콘텐츠 제작 및 SNS 운영·관리 등 소요경비

나. 추계의 전제

- 2019년 예산 집행 예상액

다. 추계결과: ‘20년부터 향후 5년간 214,150천원(연 42,830천원)

라. 재원조달방안: 교육비특별회계 100%

## 5. 연도별 비용 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0년도)	2차년도 (2021년도)	3차년도 (2022년도)	4차년도 (2023년도)	5차년도 (2024년도)
세 출	214,150	42,830	42,830	42,830	42,830	42,83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도)	2차년도 (2021년도)	3차년도 (2022도)	4차년도 (2023년도)	5차년도 (2024년도)	계
세 출	42,830	42,830	42,830	42,830	42,830	214,150
SNS 콘텐츠 제작	13,520	13,520	13,520	13,520	13,520	67,600
SNS 운영 및 관리 등	29,310	29,310	29,310	29,310	29,310	146,550

## 6. 작성자 : 공보관 홍보팀 엄경출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보관		
입안자	관·과장	공보관 장학관 오영록
	담당	홍보팀 사무관 엄경출
	담당자	지방교육행정주사보 박재형(043-290-2036)